

의안번호	
의 퇴 인	황희 의원
회 답 일	2024.06.25.
추계번호	24C1115
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 (정의)	3. “학교용지부담금”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,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거나 <u>학교시설의 매입</u> 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(이하 “부담금”이라 한다)를 말한다.	의무규정
2	안 제5조의4 (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설치)	(제4항)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2.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또는 <u>학교시설의 매입</u> 경비	의무규정
3	안 제6조 (시·도 부담 경비의 재원)	(제2항) 시·도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거나 <u>학교시설을 매입</u>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경비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·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.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조(정의) 안 제5조의4 (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설치) 안 제6조 (시·도 부담 경비의 재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개발사업 중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, 기존 학교 증축 이외에 ‘학교시설 매입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
 - 현행법은 「건축법」 등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·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하여, 특별시장 등이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‘학교용지부담금’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¹⁾
 - － ‘학교용지부담금’은 공동주택인 경우 분양가격을 기준으로,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
 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‘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’의 세출에 학교 증축 뿐 아니라 학교의 매입을 위한 경비 또한 포함되게 되며, 시·도는 학교 매입을 위한 경비를 ‘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’에서 부담할 수 있게 되어 관련 비용증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부담 가능성이 있음
-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 시행 후 ‘학교매입’이 시행될 지역 및 이의 감정평가 가격 등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과 예산규모 등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현시점에서 합리적 가정에 따른 추계가 어려움
 - 개정안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2023년 10월 ‘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’을 발표하면서 ‘(신설형) 매입형 학교’를 제시한 바 있음²⁾
 - －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‘도시형캠퍼스’를 학령인구 감소와 대도시 지역의 인구분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학교의 장점

1) 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(정의)

2. “개발사업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세대 규모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·개발하거나 공동주택(“주택법”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.

가. 「건축법」 (이하 생략)

3. “학교용지부담금”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,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(이하 “부담금”이라 한다)를 말한다.

2)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(2023.10. 서울특별시 교육청)

을 살리는 동시에 학교 및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·운영하는 분교 형태의 학교로 정의

- ‘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’ 중 (신설형) 매입형 학교는 기설된 건물 또는 신축 건물 중 교사로 사용하기 적합한 건물 전체를 매입하여 구축하는 도시형 캠퍼스로, 학교의 과대·과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또는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설립 요구가 있는 지역, 통학여건이 열악한 지역으로 지역 내 학교용지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를 요건으로 함
 -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따르면 부지가 협소할 경우 저비용으로 매입이 가능하나, 과대·과밀 및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부금, 지자체, 교육청 등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함
 - 다만,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경우에도 고덕강일지구³⁾ 외에 구체적 사업계획 및 예산규모가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, 사업지구 별로 매입되는 토지의 가격 및 주변 통학여건 등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시점에서 합리적 가정에 따른 추계가 어려움
- 이에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어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III. 부대의견

□ 없음

3)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고덕강일3지구에 24학급 이하 규모의 ‘(가칭)서울강슬초등학교 강현캠퍼스’를 2029.3.개교 목표로 진행하고 있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혜승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혜승	02-6788-4627	hs0387@assembly.go.kr